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60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1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우재준의원안(의안번호 제2206860호)	1
2. 김소희의원안(의안번호 제2207814호)	2
III . 검토의견	3
1.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3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조치명령 근거 마련	13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3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월 24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우재준의원안(의안번호 제2206860호)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 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2. 김소희의원안(의안번호 제2207814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설치·이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전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우재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신 설>	<u>제58조의10(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한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u>	<u>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u> <u>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u>

현행	우재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u>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1. <u>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u> 2.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 3. 「<u>전기사업법</u>」 제7조의2에 따른 <u>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라 한다)</u> 4. 「<u>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u>	<u>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u> ② <u>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 ③ <u>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u>

현행	우재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신설>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 5. 그 밖에 전산망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illegible]

현행	우재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u>제58조의11제1항</u>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4. (생략) <u><신설></u>		----- -----. 1. ~ 14. (현행과 같음) ② ----- <u>제58조의14제1항</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 ----- ----- ----- -----. 1. ~ 1의4. (현행과 같음) <u>1의5.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u>

현행	우재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신설> <u>1의5.</u> (생략) 2.·3. (생략) ② ~ ⑥ (생략)		<u>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u> <u>1의6.</u> (생략) <u>1의7.</u> (현행 제1호의5와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8조¹⁾는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전기·수소전기자동차)와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²⁾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무공해자동차등연

1)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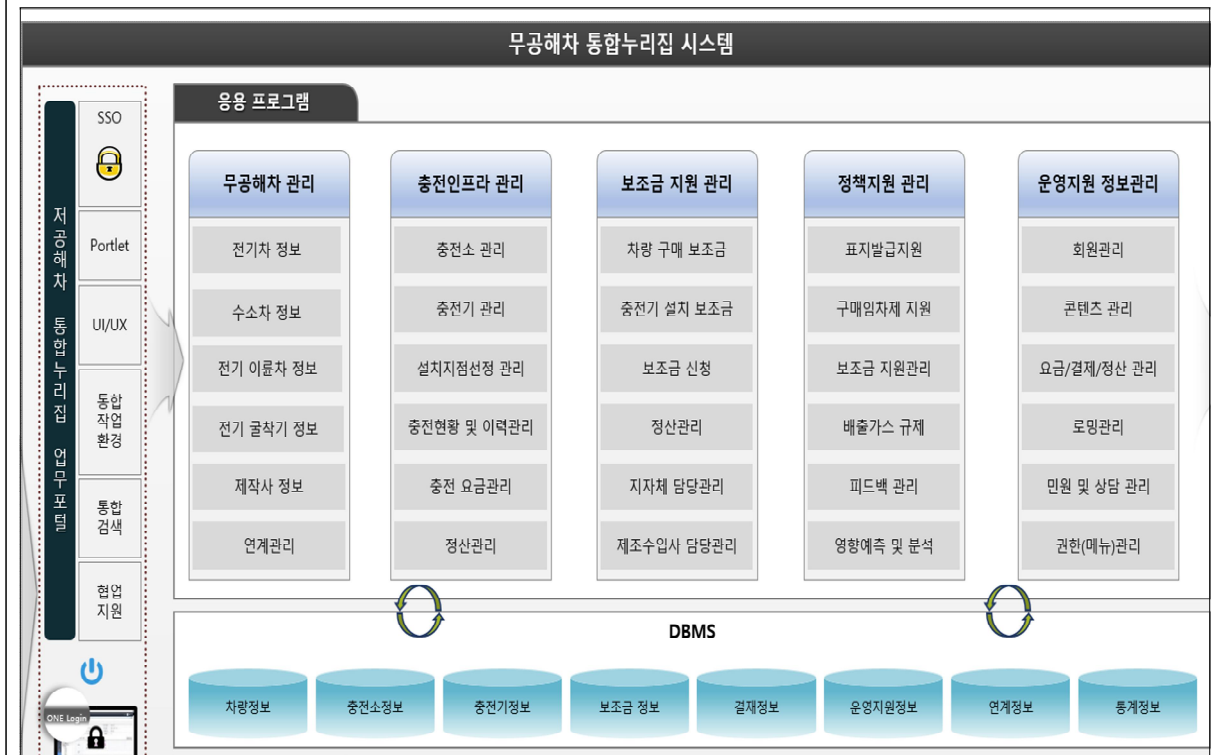
2) 시행규칙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무공해통합누리집(ev.or.kr) 개요]

- (목적) 무공해차 및 무공해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무공해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도모
- (주요기능)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록 및 보조금 지원 관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신청·접수 및 정보* 관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불편민원센터 운영 등
 - * 위치 및 규모, 운영기관, 이용가능시간, 이용가능여부 등 상태, 충전요금, 충전현황 및 사용 이력 등
-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민간 충전시설에 대한 전산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환경부장관이 전산망의 설치·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또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시설까지 통합한 전산망을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우재준의원안은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³⁾ 및 수소판매사업자⁴⁾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전산망 구축 및 자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장관의 전산망 설치·운영 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97조의2⁵⁾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규정에 대해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⁶⁾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⁷⁾에 따른 굴뚝·수질 원격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 등에 대한 구축·운영 근거 또한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음.

유사한 취지의 김소회의원안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기존의 전산망에 충전시설의 설치정보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 환경부장관은 기존의 전산망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전시설의 통합 운영 및 고장 여부, 이용 상태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인·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8) 행정안전부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으로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 직제(대통령령) 규정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별도 법인을 단순 전담 기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문구를 ‘지정 운영’이 아닌 ‘지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로 보임.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조치명령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전사업자가 매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우재준의원안 제58조의11 신설),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소희의원안 제58조의11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우재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신설>	제58조의11(충전시설의 정기검사)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점검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현행	우재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u>	<u>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제58조의10 ~ 제58조의12 (생략)	제58조의12 ~ 제58조의14 (현행 제58조의10부터 제58조	제58조의12 ~ 제58조의14 (현행 제58조의10부터 제58조

련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정기검사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들이 충전기 고장 등의 관리 미비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현황 및 운영주체]

(단위: 기, %)

구분	합계	공공				민간		
		소계	환경부 (직접)	지자체 등	한국전력	소계	민간 (자체)	민간 (환경부 보조)
합계	429,653	20,451	8,364	1,110	10,977	409,112	205,756	203,356
	100.0%	4.8%	1.9%	0.3%	2.6%	95.2%	47.9%	47.3%
급속	48,399	14,361	8,332	837	5,192	34,038	30,882	3,156
	100%	29.7%	17.2%	1.7%	10.7%	70.3%	63.8%	6.5%
완속	381,164	6,090	32	273	5,785	375,074	174,874	200,200
	100.0%	1.6%	0.0%	0.1%	1.5%	98.4%	45.9%	52.5%

*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시스템 추출 기준('25.2.28 기준)

이에 우재준의원안 제58조의11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김소희의원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사용자 불편

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우재준의원안에서는 정기검사의 수검 의무 및 개선 명령의 근거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김소희의원안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차장법」 9) 및 「의료법」 10)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9)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536